

변경대비표

[신탁계약서]

1. 펀드명 : 하나 UBS 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[주식]

2. 주요 변경내용

-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(2011.11.5 시행)
-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(2018. 9. 28 시행)
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(2019. 1.15 시행)
-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(2019. 9.16 시행)
-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(2021.10.21 시행)
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(2022.08.30 시행)
- 수익증권저축약관 개정사항 반영(2014.06.25 개정)
- 보수인출사유 추가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22년 09월 16일

4. 대비표

구 분	변경사유	변 경 전	변 경 후
제 4 조(집 합투자업 자 및 신탁업자 의 업무)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(2021.10.21 시행)	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,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,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,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업무를 수행한다.	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,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,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, 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·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,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업무를 수행한다.
제 6 조(신 탁원본의)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	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의 가액은 1좌당 1원을	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의 가액은 1좌당 1원을

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)	반영(2019. 9.16 시행)	기준으로 제 30 조에서 정한 기준가격(이하 "기준가격"이라 한다)을 적용하며, 설정할 수 있는 수종의 <u>수익증권</u> 의 총 좌수는 10 조좌로 한다.	기준으로 제 30 조에서 정한 기준가격(이하 "기준가격"이라 한다)을 적용하며, 설정할 수 있는 수종의 <u>수익권 (법 제 189 조제 1 항 및 제 3 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신탁의 수익권, 이하 "수익증권"이라 한다)</u> 의 총 좌수는 10 조좌로 한다.
제 9 조(수익권의 분할)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(2019. 9.16 시행)	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 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, 수익증권으로 표시한다.	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 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, 수익증권으로 <u>발행한다</u> .
제 10 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)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(2019. 9.16 시행)	① 집합투자업자는 제 6 조 및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<u>수익증권 발행가액</u>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"전자증권법"이라 한다)」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.	① 집합투자업자는 제 6 조 및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<u>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</u>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"전자증권법"이라 한다)」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<u>전자증권법 제 2 조 제 6 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(이하 "전자등록기관"이라 한다)</u> 를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.
제 14 조(수익자명부)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(2019. 9.16 시행)	①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<u>한국예탁결제원</u> 에 위탁하여야 한다. ②집합투자업자는 <u>한국예탁결제원</u> 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, <u>한국예탁결제원</u> 은 관련법령·신탁계약서·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	①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<u>전자등록기관</u> 에 위탁하여야 한다. ②집합투자업자는 <u>전자등록기관</u> 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, <u>전자등록기관</u> 은 관련법령·신탁계약서·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

		<p>처리하여야 한다.</p> <p>③(생략)</p> <p>④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자체 없이 이를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에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⑤<u>한국예탁결제원</u>은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1.~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명부("수익자명부"라 한다 이하 같다)를 작성하여야 하며,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.</p>	<p>처리하여야 한다.</p> <p>③(현행과 같음)</p> <p>④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자체 없이 이를 <u>전자등록기관</u>에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⑤<u>전자등록기관</u>은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1.~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<u>전자등록기관</u>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명부("수익자명부"라 한다 이하 같다)를 작성하여야 하며,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.</p>
제 15 조(자산운용 지시 등)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(2018. 9. 28 시행)	<p>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 1 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 64 조제 1 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<p>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 1 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<u>한도로 하여</u>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 64 조제 1 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
제 30 조(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)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(2021.10.21 시행)	<p>①집합투자업자는 제 29 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. 기준가격[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]은 제 2 항의 기준가격의 공고·게시일 전날의 <u>대차대조표상에</u></p>	<p>①집합투자업자는 제 29 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. 기준가격[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]은 제 2 항의 기준가격의 공고·게시일 전날의 <u>재무상태표상에</u></p>

		<p>계상된 투자신탁[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]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"이라 한다)을 그 공고·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[당해 종류 수익증권]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, 1,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.</p>	<p>계상된 투자신탁[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]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"이라 한다)을 그 공고·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[당해 종류 수익증권]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, 1,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.</p>
제 32 조(투자신탁 의 회계감사)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(2021.10.21 시행)	<p>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.</p> <p>1. <u>대차대조표</u> 2~3. (생략)</p>	<p>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.</p> <p>1. <u>재무상태표</u> 2~3. (현행과 같음)</p>
제 35 조(상환금등 의 지급)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(2019. 9.16 시행)	<p>③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</p>	<p>③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<u>전자등록기관</u>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</p>
제 39 조(보수)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(2021.10.21 시행) 보수인출사유 추가	<p>②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(이하 "보수계산기간"이라 한다)은 최초 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<u>대차대조표</u>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</p> <p>1. 보수계산기간의 종료 2. 투자신탁의 전부 해지</p>	<p>②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(이하 "보수계산기간"이라 한다)은 최초 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<u>재무상태표</u>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</p> <p>1. 보수계산기간의 종료 2. <u>투자신탁의 일부해지(해지분에 상당하는 투자신탁보수 인출에 한한다)</u> 3. 투자신탁의 전부 해지</p>
제 40 조(판매수수	수익증권저축약 관 개정사항	<p>④판매회사는 종류 S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</p>	<p>④판매회사는 종류 S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</p>

료)	반영(2014.06.25 개정)	환매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후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. 다만, 제 34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해 이익분배금으로 매수한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 52 조의 규정에 의한 <u>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</u> 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.	환매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후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. 다만, 제 34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해 이익분배금으로 매수한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 52 조의 규정에 의한 <u>수익증권저축약관</u> 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.
제 41 조(환매수수 료)	수익증권저축약 관 개정사항 반영(2014.06.25 개정)	③판매회사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52 조의 규정에 의한 "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"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.	③판매회사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52 조의 규정에 의한 "수익증권저축약관"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.
제 42 조(기타 운용비용 등)	문구 명확화	②제 1 항에서 "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"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. 1. (생략) 2. 증권 등 자산의 <u>예탁</u> 및 결제비용 3.~9. (생략)	②제 1 항에서 "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"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. 1. (현행과 같음) 2. 증권 등 자산의 <u>예탁비용</u> (<u>전자증권법</u> 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<u>전자등록비용</u>) 및 결제비용 3.~9. (현행과 같음)
제 44 조(집합투자 업자 및 신탁업자 의 변경)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(2020. 4. 1 시행)	(신설)	④제 1 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수익자는 제 39 조와는 별도로 투자신탁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, 이는 다음 각 호에 의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 단,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에 동의한 경우, 또는 법 제 64 조제 1 항에 해당하는

			<p><u>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<u>1. 보상금액: 제 39 조제 3 항 각호에 따른 보수율*변경시행일 전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*제 2 호의 대상기간 일수</u></p> <p><u>2. 대상기간: 변경시행일로부터 6 개월간. 단, 신탁계약 종료일이 정해져 있고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의 신탁계약기간이 6 개월 미만인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변경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.</u></p> <p><u>3.지급시기: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시행일</u></p> <p><u>⑤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제 4 항 적용과는 별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</u></p>
제 45 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	<p>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(2022.08.30 시행)</p> <p>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(2018. 9. 28 시행)</p> <p>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(2019. 9.16 시행)</p>	<p>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1.~2. (생략)</p> <p>3.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</p> <p>4.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</p>	<p>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1.~2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3. 설정한 후 1년(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의제1호에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)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</u></p> <p><u>4.설정하고 1년(법 시행령 제81조제</u></p>

		<p>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1.~4. (생략)</p> <p>5.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 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</p> <p>③ 제 1 항제 3 호 및 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.</p>	<p>3항의제1호에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)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</p> <p>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1.~4. (생략)</p> <p>5.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 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법 제 6 조 제 6 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</p> <p>③ 제 1 항제 3 호 및 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.</p>
제 49 조(금전차입 등의 제한)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(2018. 9. 28 시행)	<p>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.</p> <p>1.~2.(생략)</p>	<p>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.</p> <p>1.~2.(현행과 같음)</p>

		(신설)	<u>3. 그 밖에 투자신탁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시행령 제 83 조 제 2 항으로 정하는 때</u>
제 50 조(공시 및 보고서 등)	<p>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(2011.11.5 시행)</p> <p>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(2019. 1.15 시행)</p> <p>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(2019. 9.16 시행)</p> <p>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(2021.10.21 시행)</p>	<p>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(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)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 3 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.~5. (생략) <p>⑦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</p>	<p>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(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)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 3 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.</p> <p><u>1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(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,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)</u></p> <p><u>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(법 제 230 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)</u></p> <p>3.~5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⑦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,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</u></p>

	<p>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</p> <p>⑧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</p>	<p>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</p> <p>⑧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<u>전자등록기관</u>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</p>
제 52 조(수익증권 의 통장거래) 개정)	수익증권저축약관 개정사항 반영(2014.06.25 개정)	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"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"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.
부칙	-	(신설) 부 칙 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2 년 09 월 16 일부터 시행한다.</u>

[간이투자설명서]

1. 펀드명 : 하나 UBS 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[주식]

2. 주요 변경내용

-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22년 09월 16일

4. 대비표

구 분	변경사유	변 경 전	변 경 후
요약정보 - 투자비용	정기갱신	-	<u>정보 업데이트</u>
요약정보 - 투자실적추 이	정기갱신	-	<u>정보 업데이트</u>
요약정보 - 운용전문인 력	정기갱신	-	<u>정보 업데이트</u>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1. 펀드명 : 하나 UBS 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[주식]

2. 주요 변경내용

-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(2011.11.5 시행)
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(2015.7.8 시행)
-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(2018. 9. 28 시행)
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(2019. 1.15 시행)
-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(2019. 9.16 시행)
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(2020. 7. 1 시행)
-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(2021.10.21 시행)
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(2022.08.30 시행)
-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
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반영
- 보수인출 사유 추가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22 년 09 월 16 일

4. 대비표

구 분	변경사유	변 경 전	변 경 후
문서전반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(2021.10.21 시행)	<u>대차대조표</u>	<u>재무상태표</u>
문서전반 (해당시)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(2019. 9.16 시행)	<u>한국예탁결제원</u>	<u>전자등록기관</u>
문서전반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	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</u>	<u>(삭제)</u>

	개정사항 반영 (2021.10.21 시행)		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반영	<p>9.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(소규모펀드)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</p>	<p>9.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(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)이 되는 날에 설정액 50 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</p>
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

2. 집합투자기 구의 연혁	정보 업데이트	-	<u>2022년 09월 16일:</u> <u>-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</u> <u>-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</u> <u>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반영</u>
5. 가. 운용전문인 력	정기갱신	-	<u>정보 업데이트</u>
8.가. 3) (2) 금전차입 등의 제한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(2018. 9. 28 시행)	<p>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합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.</p> <p>1.~2. (생략) (신설)</p>	<p>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합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.</p> <p>1.~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그 밖에 투자신탁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</p>

			<u>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문에 법시행령 제 83 조 제 2 항으로 정하는 때</u>
10.라. 이 집합투자기 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	정기갱신	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<u>21.08%</u> 임에 따라 6 등급 중 2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높은 위험 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	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<u>20.78%</u> 임에 따라 6 등급 중 2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높은 위험 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
12. 나. 집합투자재 산의 평가방법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(2020. 7. 1 시행)	외화표시유가증권인 상장주식 및 상장채권 : 그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최종시가 또는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외국집합투자증권: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. 다만, 외국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(이외 자산의 평가방법은 생략)	외화표시유가증권인 상장주식 및 상장채권 : 그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의 <u>전날의</u> 최종시가 또는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외국집합투자증권: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. 다만, 외국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<u>전날의</u> 최종시가 (이외 자산의 평가방법은 현행과 같음)
13. 나. 집합투자기 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정기갱신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반영		<u>정보 업데이트</u> (주석 업데이트) <u>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금액 및 내역 추가</u>
13. 다.	보수인출사유	지급시기: 3 개월 후급, 신탁의	지급시기: 3 개월 후급, 신탁의

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	추가 문구명확화	전부해지 시 ※ 기타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하는 비용 (생략) 1.(생략) 2. 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3.~9.(생략)	일부해지 및 전부해지 시 ※ 기타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하는 비용 (현행과 같음) 1.(현행과 같음) 2. 증권 등 자산의 예탁비용(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전자등록비용) 및 결제비용 3.~9.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	---	---

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

1. 재무정보 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. 집합투자기 구의 운용실적 (세전기준)	정기갱신	-	정보 업데이트 [모투자신탁의 자산구성현황] 추가
---	------	---	--
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

1. 다. 최근 2 개사 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1. 라. 운용자산규 모	정기갱신	-	정보 업데이트
3. 가. 3) 의무와 책임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신탁업자의 확인사항 (생략) (신설)	신탁업자의 확인사항 (현행과 같음) 7.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 · 관리 중인 집합투자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

	(2021.10.21 시행)	<u>여부</u>
--	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

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

2. 가. 의무해지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(2018. 9. 28 시행)	<p>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</p> <p>(생략)</p> <p>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법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224 조의 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</p>	<p>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 <p>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<u>법 제 6 조 제 6 항에 따라 인정되거나</u>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224 조의 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</p>
2. 나 임의해지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(2022.08. 30 시행)	<p>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</p> <p>- (생략)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/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</p> <p>(생략)</p> <p>-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,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</p>	<p>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</p> <p>- (현행과 같음) 설정한 후 1년 (<u>법 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의제 1 호에</u> <u>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</u>)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/ 설정하고 1년 (<u>법 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의제 1 호에</u> <u>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</u>)이 지난 후 1개월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</p>

		<p>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이 투자신탁의 향후 처리 계획(해지, 합병, 모자형 전환, 존속 등)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.</p>	<p>(현행과 같음)</p> <p>-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1년(<u>법 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의제 1 호에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</u>)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, 설정하고 1년(<u>법 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의제 1 호에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</u>)이 지난 후 1개월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이 투자신탁의 향후 처리 계획(해지, 합병, 모자형 전환, 존속 등)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.</p>
3.가.2)자산 운용보고서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(2019.01.15 시행)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(2019. 9.16 시행) 기재사항	<p>(1)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(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)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.</p> <p>자산운용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.</p>	<p>(1)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(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)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.</p> <p>자산운용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<u>전자등록기관</u>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<u>직접,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</u> 교부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.</p>

	보완	(2)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. (생략) (신설)	(2)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. (현행과 같음) <u>· 그 밖에 법시행령 제 92 조제 3 항에서 정하는 사항</u>
3.나.1)신탁 계약변경에 관한 공시	기재사항 보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(2015.7. 8 시행)	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. (1)~(3)(생략) (4)투자신탁종류의 변경 (5)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(6)집합투자업자의 변경 (신설) (7)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(8)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	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. (1)~(3)(현행과 같음) (4)투자신탁종류의 변경(<u>다만,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, 그 내용이 신탁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</u>) (5)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<u>(6)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(법시행령 제 80 조제 1 항제 3 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)</u> (7)집합투자업자의 변경(<u>합병 · 분할 · 분할합병, 금융위원회의 조치 및 명령에 따른 경우에는 제외</u>) (8)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(9)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
3.나.2)수시 공시	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(2011.11.5 시행)	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(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)이 발행한 경우 자체없이 집합투자업자 (www.ubs-hana.com) ·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(www.kofia.or.kr)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	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(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)이 발행한 경우 자체없이 집합투자업자 (www.ubs-hana.com) ·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(www.kofia.or.kr)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

	<p>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(2021.10.21 시행)</p> <p>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(2022.08.30 시행)</p>	<p>통보 및 집합투자업자 · 판매회사의 본 · 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.</p> <p>(1)운용전문인력의 변경 (2)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(3)~(7)(생략) (8) 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(9)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(10)~(11) (생략)</p>	<p>통보 및 집합투자업자 · 판매회사의 본 · 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.</p> <p><u>(1)운용전문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(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,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)</u> <u>(2)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(법 제 230 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)</u> <u>(3)~(7)(현행과 같음)</u> <u>(8) 설정 이후 1년(법 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의제 1호에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)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(9) 설정되고 1년(법 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의제 1호에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)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(10)~(11)(현행과 같음)</u></p>
3.나.4)위험 지표의 공시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반영	(신설)	<u>위험지표의 공시: 해당사항 없음</u>

